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이정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5월 21일
발 의 자 : 이정인, 채유미, 장상기,
김태호, 김인호, 이은주,
이승미, 홍성룡, 노승재,
김소영, 강동길, 김소양,
이병도, 박순규, 이영실,
김제리, 김혜련, 봉양순,
정진술, 오현정 의원 (20명)

1. 제안이유

-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“정신장애”를 들고 있는바, 단순히 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‘정신장애’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5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정신장애로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의 해촉) 서울특별시 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정신장애로</u>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5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</u>-----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